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27
----------	-------

발의연월일 : 2023. 12. 20.

발 의 자 : 김미애 · 허숙정 · 이종성
김석기 · 이인선 · 최영희
하영제 · 백종헌 · 조정태
이채익 · 강기윤 · 권명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피해자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특히 범죄 피해 후에도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중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공판기록 열람·등사의 특례)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이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공판기록 열람·등사의 특례)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u> <u>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u> <u>③ 재판장이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u>

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재
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
항에 따른 허가절차와 관련하
여서는 「형사소송법」 제294
조의4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